

유선 이어폰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7685 (2026.02.02.)
-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베트남
- 최종 원산지: 베트남



II 사실관계

용도	• 스마트폰, 컴퓨터, 오디오 기기 등에 연결하여 음악이나 음성 신호를 청취하는 용도		
재료		중국	• 오디오 플러그 • 실리콘 캡 • 폴리우레탄 에나멜 선 • 포장재
		베트남	• 스피커 • 스피커 케이스 • PVC 케이블 재료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오디오 플러그, 에나멜 선 등 부품 생산 Manufacturing ▾  베트남  STEP 1 중국산 부품 수입 STEP 2 케이블 어셈블리 제작 STEP 3 스피커 생산 STEP 4 최종 조립 STEP 5 검사 및 포장 Export ▾  베트남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 오디오 플러그, 실리콘 캡, 폴리우레탄 에나멜 선, 포장재 생산
		베트남	• 에나멜 선, PVC 케이블 재료, 오디오 플러그를 결합하여 케이블 어셈블리 완성 • 스피커 생산 • 스피커를 케이블에 납땜한 후 하우징과 실리콘 캡 장착 • 최종 검사 후 포장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해당 사안에서 유선 이어폰의 핵심 구성요소는 스피커로 판단되며, 스피커의 생산과 더불어 기타 부품의 최종 조립 또한 베트남에서 수행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

Ⅳ 시사점

- ⊙ CBP는 본 사안에서 유선 이어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스피커 생산과 최종 조립이 하나의 국가에서 수행된 것을 근거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 ⊙ 다만, 국가 간에 수행되는 제조공정이 달라지거나, 이어폰에 음량 조절 등의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부품이 추가되는 경우, 총체적 상황에 기반하여 사례별로 다른 판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아래 사례는 본 사안과 같은 유선 이어폰에 마이크 및 음량 조절용 PCBA가 부품으로 추가된 사례로, 스피커는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나, 필리핀에서 수행된 공정이 보다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어 필리핀을 최종 원산지로 판정함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유선 이어폰
사례번호	NY N350967 (2025.07.24.)
쟁점사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중국] - 빈 인쇄회로기판, 마이크, 스피커 생산 • [필리핀] - SMT를 활용하여 마이크 및 음량 조절용 PCBA 생산 - 플라스틱 하우징 부품 제조 - 절연 전선 및 전선 어셈블리 생산 - 스피커를 전선 어셈블리에 납땜 후 이어폰 하우징에 조립
판정 결과	•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제조공정은 의미 있고 복잡한 공정에 해당하며, 중국산 마이크, 빈 인쇄회로기판, 스피커 등의 부품은 필리핀에서의 공정을 통해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필리핀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